

2027 한권으로 끝내는 노동법1 추록 및 정오표(2026.10.27. 기준)

구분	수정사항	수정 전	수정 후																								
P31 문제03	정답수정	[정답] ① ~~0개~~	[정답] ② 1개																								
P42	내용추가	▶ 겸직여부나 겸직소득규모도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가 될 수 없음.(判) ▶ (추가)	▶ 겸직여부나 겸직소득규모도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가 될 수 없음.(判) ▶ 출자여부도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가 될 수 없음(判)																								
P164	조문수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는 제외))																								
P440날개 문제21	해설수정	[21] × - 파견사업주, 사용자사업주, ~~파견근로~~ 간 합의.	[21] × - 파견사업주, 사용자사업주, ~~파견근로~~ 자 간의 합의.																								
P532	시행령 추가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1. 돌봄... 2. 부모, 배우자... 3. (추가)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1. 돌봄... 2. 부모, 배우자...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590	내용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유</th><th>연금 수급권 담보제공</th><th>퇴직금 중간정산</th><th>확정기여형 중도인출</th></tr> </thead> <tbody> <tr> <td>6개월이상 요양필요한 사람의 의료비 부담(본인(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td><td>O*</td><td></td><td></td></tr> <tr> <td>표 맨 밑에 내용 추가</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사유	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6개월이상 요양필요한 사람의 의료비 부담(본인(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	O*			표 맨 밑에 내용 추가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유</th><th>연금 수급권 담보제공</th><th>퇴직금 중간정산</th><th>확정기여형 중도인출</th></tr> </thead> <tbody> <tr> <td>6개월이상 요양필요한 사람의 의료비 부담(본인(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td><td>O* ** (별표2개도 추가)</td><td></td><td></td></tr> <tr> <td>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td><td>X</td><td>O</td><td>X</td></tr> </tbody> </table>	사유	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6개월이상 요양필요한 사람의 의료비 부담(본인(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	O* ** (별표2개도 추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X	O	X
사유	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6개월이상 요양필요한 사람의 의료비 부담(본인(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	O*																										
표 맨 밑에 내용 추가																											
사유	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6개월이상 요양필요한 사람의 의료비 부담(본인(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	O* ** (별표2개도 추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X	O	X																								